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7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2월 3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1.10.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비부담 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5%씩 추가하여 최고 85%까지 부담하도록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정함(안 제4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 태 호)

가. 조례안의 제출배경(시비-구비 분담의 배경)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그러한 부담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분담 비율은 「보조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²⁾, 해당령 [별표 1] 97호를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으로 정부는 서울시에 총 보조금의 50%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음³⁾.

- 그 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제46조에서 특별시와 자치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부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⁴⁾
- 이에 집행부는 시비부담 비율을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5%씩 추가하여 최고 85%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나. 부담비율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비율을 지표로 선정하여, 재정력 지표(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3단계, 수급자 지표(수급자 비율)는 4단계 구간으로 배분함으로써 총 12(3×4)개의 매트릭스로 구성하였음.
- 이는 특별시와 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시·군·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부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즉,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사용함으로써 자치구의 서로 다른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있고, 수급자 비율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자치구의 서로 다른 수급자의 수를 고려하고 있음.

○ 다만, 수급자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집단의 선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원안은 자치구의 수급자 비율을 서울시 전체 수급자수 대비 해당 자치구의 수급자수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음. 이는 각 자치구의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자치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는 모집단을 서울시 전체 수급자수가 아닌 해당 자치구의 전체인구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울시에 甲과 乙이라는 두 개의 자치구만 있고, 甲의 전체 인구는 750명, 수급자수는 75명, 乙의 전체인구는 100명, 수급자수는 25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서울시 전체 수급자수를 모집단으로 하는 원안에 따른 경우 수급자 비율은 甲 75%, 乙 25%가 되나, 해당 자치구의 전체인구를 모집단으로 하게 되면 수급자 비율은 甲 10%, 乙 25%가 됨.

○ 모집단을 서울시 전체 수급자수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첫째, 사실상 수급자의 비율이 아닌 수급자의 실제숫자를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유리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 둘째, 재정력지표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경우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수급자 비율만 서울시 전체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으며,
- 셋째 장애인복지급여에 있어 자치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게 되면 이른바 ‘장애인 인구(저소득 인구) 불균등론’⁵⁾ 등의 비판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원안의 [별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율’에 자치구 수급자 비율의 산정식은

$$\frac{\text{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text{전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times 100\%$$

에서

$$\frac{\text{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text{자치구 전체 인구수}} \times 100\%$$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자치구 수급자 비율의 산정식이 위와 같이 수정될 경우, 원안의 “② 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자치구의 균등배분을 위하여 바람직함.

- 즉, ‘100분의 3 미만’은 ‘0.065% 미만’으로,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4 미만’은

‘0.065% 이상 0.085% 미만’으로,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장애인 인구(저소득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체 사업비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6 미만’은

‘0.085% 이상 0.105% 미만’으로,

‘100분의 6 이상’은 ‘0.105% 이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수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2010년 기준), 각 자치구의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원 안>

구 분		② 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6 미만	100분의 6 이상
① 자치구 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50% (종로, 중구, 용산, 영등포, 서초)	55%	60%	65% (강남, 송파)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60% (성동, 광진, 금천, 동대문, 서대문)	65% (마포, 구로, 동작)	70% (양천, 관악, 강동)	75% (강서)
	100분의 55미만	70%	75% (성북, 도봉, 은평,)	80% (중랑, 강북)	85% (노원)

<수정안>

구 분		② 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			
		0.065% 미만	0.065% 이상 0.085% 미만	0.085% 이상 0.105% 미만	0.105% 이상
① 자치구 의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50% (용산, 영등포, 서초)	55%	60% (종로, 중구, 송파)	65% (강남)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60% (광진, 동대문)	65% (성동, 금천, 양천, 관악,)	70% (강동, 서대문, 마포, 구로, 동작)	75% (강서)
	100분의 55미만	70%	75% (성북, 은평,)	80% (중랑, 도봉)	85% (노원, 강북)

- 수정된 구간값을 적용한 결과,
 - ‘100분의 3 미만’에서 ‘0.065% 미만’으로 수정된 첫번째 구간은 원안의 경우 10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하나 수정안에 따르면 5개 자치구만이 이에 해당하여 5개 자치구가 줄어들었고,
 -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4 미만’에서 ‘0.065% 이상 0.085% 미만’으로 수정된 두번째 구간은 원안의 경우 6개 자치구가, 수정안의 경우에도 6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하여 변동이 없으며,
 -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6 미만’에서 ‘0.085% 이상 0.105% 미만’으로 수정된 세번째 구간은 원안의 경우 5개 자치구만 이에 해당하나 수정안에 따르면 10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하여 5개 자치구가 늘어났고,
 - ‘100분의 6 이상’에서 ‘0.105% 이상’으로 수정된 네번째 구간은 원안의 경우 4개 자치구가, 수정안의 경우에도 4개 자치구가 이에 해당하여 변동이 없음.

- 결론적으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하여 10개의 자치구가 시비분담비율이 높은(자치구 분담비율이 낮은) 방향으로 이동된 바,
 - 원안에 비하여 수정안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낮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⁶⁾.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국가가 수급자나 장애인을 특정지역에 많이 거주하도록 주택

6) 201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자치구의 총부담액이 497,711천원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음.

정책을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그 지역에 장애인이 많으니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됨. 특히 재정력이 열악한 곳은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등이 많다보니 재산세 수입도 적음.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 전적으로 동의함. 이와 관련하여 행정실 주관으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정 대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중임..

(질의) 시제출안은 재정력지표를 3개 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를 5개 구간으로 넓히고, 시비부담을 50~90%로 넓히는 방식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답변) 자치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방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앞서의 노인연금 및 장애인연금 관련 비용부담조례에서도 3개 구간으로 나누었음. 또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55-90%로 올리는 것까지는 고민중임.

(질의) 그럴 경우 자치구별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변) 자치구 전체 총 25억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나옴.

(질의) 강남구의 재산세분을 공동과세분으로 서울시가 가져감. 그러나 당시 강남 3구가 더 부담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음. 강남 3구에도 취약계층이 있음. 서울시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룰을 정했다면, 그렇게 가야함. 이에 대해 책임을 갖고 답변바람.

(답변) 어떤 구는 빠지고 어떤 구는 들어가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입장임.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27
----------	-----

제출년월일 : 2012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11.10.5)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비부담 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수급자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하되 최저 50%에서 시작하여 단계별로 5%씩 추가하여 최고 85%까지 부담하도록 정함(안 제2조 및 별표)
- 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중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3조)
- 다.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활동지원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

이 없도록 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예산조치 : 2012년 예산 반영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및 자치구 합의완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1. 10. 14. ~ 11. 2.) 결과 : 의견 있음

(2) 규제심사 결과 : 행정규제 아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첨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 비율과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비용의 예탁)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매월 20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수탁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율

구 분		② 자치구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4 미만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6 미만	100분의 6 이상
①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55	100분의 60	100분의 65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100분의 60	100분의 65	100분의 70	100분의 75
	100분의 55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75	100분의 80	100분의 85

□ 산출방법

$$① \text{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 \frac{\text{기준재정수입액}}{\text{기준재정수요액}} \times 100\%$$

$$② \text{ 자치구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 = \frac{\text{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text{전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times 100\%$$

※ 비고

1.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은 각각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전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자치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수를 따르며,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강서구 노원구 중랑구	<p>○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관련 <수정요구안> -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국·시·비 부담률(50:50) 그대로 유지 적용 • 국비 50%, 시비 50%, 구비 0%</p> <p><의견> -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 부담 고려</p>	<p>○ 미반영</p> <p>-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활동지원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p> <p>- 따라서, 조례안은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분담하였으므로</p> <p>- 자치구비를 제외한 국·시비만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서초구	<p>○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관련 <수정요구안> - 시·구비 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시비 85%, 구비 15%</p> <p><의견> - 서초구 세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구비 부담완화 요망</p>	<p>○ 미반영</p> <p>- 관련 법령에 활동지원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수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p> <p>-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p>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서대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관련 〈수정요구안〉 -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지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 5단계 - 자치구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비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분의 3미만~100분의 6이상 → 100분의 3미만~100분의 7이상 - 시비부담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85% → 50%~100% <p style="margin-top: 20px;">〈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재정력의 경우 49%~143% 까지 큰 편차가 있으나 55%~75%까지만 반영 - 지표를 세분화하면서 시비부담 비율을 올려 재정력 하위 자치구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분담비율을 세분화할 경우 - 일부 자치구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일부 자치구는 부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영 곤란
마포구 성북구 강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안 제2조 제1항 별표 및 부칙 시행일 관련 〈수정요구안〉 - 조례제정 시기 연기 - 시비 부담비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반영 -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 - 시비 부담률 상향 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사업의 시비분담비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 시비 부담률 34.5% 보다 추가로 부담하는것은 곤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비50%)으로 세출순증가 또는 세입순감소 요인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안 제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지원기준에 의거 작성

- 지원대상자 : 11,920명('12년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인원)
- 매년 1,080여명 지원인원 증가예상(보건복지부 증가추세 반영*)

* 복지부 지원예상 인원 : 5만5천명('12) → 6만명('13) → 6만5천명('1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출	예산(백만원)	96,000	104,692	113,412	122,140	130,860	567,104
	대상자 수(명)	11,920	13,002	14,085	15,169	16,252	70,42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국비		48,000	52,346	56,706	61,070	65,430	283,552
시비	지방세수입	33,086	36,118	39,127	42,138	45,147	195,616
	세외수입						
	지방채 등						
기타(구비)		14,914	16,228	17,579	18,932	20,283	87,937
민간							
합계		96,000	104,692	113,412	122,140	130,860	567,105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증진팀 최현수(3707-8476)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가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며
- 보건복지부 지원 예상인원을(매년 5천명 증가) 감안하여 우리시 대상인원 증가율을 추정하여 작성.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복지부 지원대상	55,000명	60,000명	65,000명	70,000명	75,000명
서울시 지원대상	11,920명	13,002명	14,085명	15,169명	16,252명
비 율	21.67%	21.67%	21.67%	21.67%	21.67%

2. '12년도 소요예산 추계

- 지원대상 : 만6세~64세 장애등급1급 장애인 11,920명
- 소요예산 : 96,000백만원(국비 48,000백만원, 시비 33,086백만원, 구비 : 14,914백만원)
 - 산출내역 : 11,920명×약671천원×12개월

3. '12년이후 연도별 소요예산 : 471,104백만원

- 2013년 : 104,692백만원(13,002명×약671천원×12개월)
 - 국비 52,346백만원, 시비 36,118백만원, 구비 : 16,228백만원
- 2014년 : 113,412백만원(14,085명×약671천원×12개월)
 - 국비 56,706백만원, 시비 39,127백만원, 구비 : 17,579백만원
- 2015년 : 122,140백만원(15,169명×약671천원×12개월)
 - 국비 61,070백만원, 시비 42,138백만원, 구비 : 18,932백만원
- 2016년 : 130,860백만원(16,252명×약671천원×12개월)
 - 국비 65,430백만원, 시비 45,147백만원, 구비 : 20,283백만원